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2025년 전기전자업종 패키지서비스 운영기관 모집 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기반센터의 연구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기전자업종 패키지 서비스 운영기관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반센터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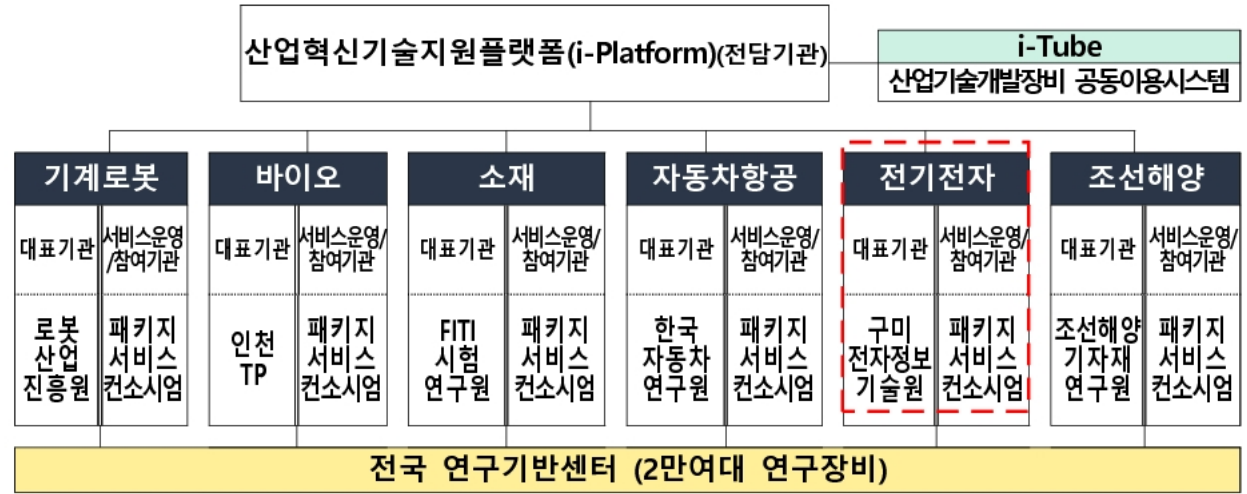
2024년 10월 11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전국 「연구기반센터」에 既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화된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 연구기반센터에 산재되어 있는 既 구축된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 * 전기전자업종 '24년 4개 서비스 품목(전기전자부품, 광(조명), 디지털제조, 반도체) 지원

나. 추진체계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기 선정 완료

다. 사업 내용

- (대표기관) 업종별 대표기관을 지정(단독)하여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연구기반 활용 촉진

역 할	주요 내용
대표기관 역할 수행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 업종별 협의회 운영, 기업 수요조사 실시, 패키지 서비스 도출, 패키지서비스 대상기업 선정, 사업홍보 등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 기업의 기술애로 컨설팅, 연구기반 활용 중계 등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 인력 지정·운영 - 기업 애로사항 분석, 패키지서비스 연결, 연구기반센터 연결 등

- (패키지서비스 운영·참여기관) 업종별 기업의 핵심품목 관련 애로지원을 위해 서비스 운영·참여기관(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패키지서비스 지원

* 본 공고를 통해 '25년도 4개 패키지서비스 및 운영기관 신규 선정

역할	주요 내용
패키지서비스 기업지원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분석,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지원
인프라 고도화	▶ 노후장비 성능향상 지원으로 기업 장비 활용 범위 확대 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내용

-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 우수 기업지원 기관 혹은 사업계획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프라 고도화(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나.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 품목 : 8개 과제 (패키지서비스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대상품목 목록〉

업종	No	서비스 품목
전기전자	1	뷰티·헬스케어 디바이스 부품 및 제품
	2	AIoT 융복합 부품·제품
	3	국산화 개발 가능 항공전자 부품
	4	자율주행용 영상기반 카메라 광학부품
	5	카메라 영상 기반 객체 인식 AI 시스템 관련 부품·장비·제품
	6	차세대 초실감형 고성능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및 디바이스 핵심부품 기술지원
	7	차세대 퍼블릭 디스플레이 소재 및 핵심부품 패키지서비스 지원
	8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지원 패키지서비스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패키지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품목별 137.5 백만원 국비 지원 (4개 품목 선정)
- (인프라 고도화) 서비스 품목별 50 백만원
 - * 인프라 고도화 지원은 전담기관의 단계평가 시 최종 결정되며, 필요기관만 신청하여도 무방하며 필수사항은 아님
- 선정 과정에서 지원 분야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5. 01. ~ 2025. 12 (12개월 이내)

라. 신청자격

-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제시된 패키지 서비스 대상 품목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마.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 '25년 단년 협약('21~'25 5단계 사업 중 5단계에 해당) ○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총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비징수
기타	○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집계에서 제외 가능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및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10. 11 ~ 11. 11		11. 14		11.15 - 22		11월 말		'25. 1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사전검토) 대표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 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기전자산업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대면발표평가는 품목별 접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성과목표 (20)	성과 목표 명확성(10)	○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성과지표의 구성 및 비중의 적정성
	목표 달성 가능성(10)	○ 사업추진을 통한 목표 달성 가능성
추진체계 (30)	추진체계 적절성(15)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신청기관 전문성(15)	○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시설·장비 보유의 전문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연구시설·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40)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업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지원 내용 적정성(10)	○ 활용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및 수요 반영 정도 ○ 기업수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 내용의 실효성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10)	○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비 적정성(10)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성과확산 (10)	사업 지속 가능성(10)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내용이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서비스운영기관의 장, 서비스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기타 사전 지원제외 기준은 「5.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jaehoon.lee@geri.re.kr)로 제출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024. 10. 11(금) ~ 2024. 11. 11(월)
접수기간	■ 2024. 11. 01(금) ~ 2024. 11. 11(월) 18:00 까지 ※ 접수 기간(시간) 내 접수처 이메일로 수신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
서식교부	■ 서식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www.geri.re.kr) 지원분야 - 기업지원사업안내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접속 → 지원분야 → 기업지원사업안내 → 동 사업 공고 선택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시험분석평가센터 이재훈 선임(☎ 054-479-2176) ■ 접수처 : 신청 공문 및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jaehoon.lee@geri.re.kr)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제출 시 신청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가능 ■ 신청시 작성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u>연락처 입력 후 정확히 확인</u> 바람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5.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서비스운영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